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9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조 국·김재원·이해민

김준형 · 황운하 · 김선민

박은정 · 차규근 · 강경숙

정춘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고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전단등 살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국내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이 계속되며 남북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이로 인 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

단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 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추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을"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4조제1항 각 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u>다음</u> 각 호	금지) ① <u>북한의 적</u>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	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	
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벌칙) ① <u>제24조제1항을</u>	제25조(벌칙) ① <u>제24조제1항제1</u>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호 및 제2호를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u>제24</u>	
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u>제24</u> 조제1항제1호 및 제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	<u>2호</u>
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u><신 설></u>	② 제2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
	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가 규
	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u>하다.</u>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